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서일준 · 이현승 · 김상훈

임종득 · 이철규 · 서천호

김은혜 · 성일종 · 엄태영

한지아 · 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 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5의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제154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6조 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153조(벌칙)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 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u></p>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 7. (생 략)

② (생 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생 략)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

5의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4. (생략)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3.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
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
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 9. (생 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2의2. (생 략)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
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
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
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
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
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
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6. ~ 9.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

-----.
-----.

1. ~ 12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한 사람